



어르신이 보내는 **작은 신호,**

손끝으로 보내는 **소중한 관심** 

 노인학대,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

신체적
학대



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
유발시키는 행위

정서적
학대


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
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
성적
학대



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
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

경제적
학대



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
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
방임



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
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
유기


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
노인을 버리는 행위

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나요?

노인학대 발견 즉시 경찰서 **112**, 혹은 노인보호전문기관 **1577-1389**,

나비새김(노인지킴이) 어플로 **신고**합니다.



※ 노인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.
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